

제25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3차 본회의 (2021.1.29.)

일반의안 심사 보고서



거창군의회
[산업건설위원회]

목 차

1	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	1
2	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	5

**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
민간위탁 동의안**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. 1. 12,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21. 1. 14.
- 다. 상정일자 :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2021. 1. 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김춘곤 도시건축과장]

- 가. 제안이유
 -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관련한 안전점검능력(전문적인 시설, 장비, 기술인력 등)을 갖춘 법인·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『옥외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』 업무를 위탁하기 위함
- 나. 주요내용
 - 1) 위탁대상 사무: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
 - 2)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
 - 옥상간판
 - 돌출간판
 - 벽면이용간판

- 지주이용간판: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간판
-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·교통시설이용 광고물·현수막 지정게시시설
-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
-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
- 위 광고물들의 게시시설

3) 위탁기간: 3년(2021. 3. 23. ~ 2024. 3. 22.)

-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

4) 선정방법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

5) 소요예산: 없음

6) 그간 추진현황

- 2020. 12.: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 수립

7) 향후계획

○ 2021. 1.

- 군의회 동의(심의·의결)
- 수탁기관 모집 공고(공개모집)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

○ 2021. 2.

- 위탁지정신청서 접수: 수탁기관 → 군수
- 수탁기관 선정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

○ 2021. 3.

- 위·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

3. 관계법령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
- 「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 제15조, 제16조, 제17조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6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신순화]

-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과 안전점검능력(전문적인 시설,장비,기술인력 등)을 갖춘 법인·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로 인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안으로서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등)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,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,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,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, 자치사무인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아울러,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은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.

-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
민간위탁 동의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. 1. 12,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1. 1. 14.

다. 상정일자 : 제2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2021. 1. 26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설명자 : 김춘곤 도시건축과장]

가. 제안이유

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실시 능력이 있는 법인·단체 등에게 『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』을 위탁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1) 위탁대상 사무: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

2) 교육의 종류

○ 신규교육(연간 6시간)

-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
-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(종업원 포함)

○ 보수교육(연간 3시간)

- 옥외광고 사업자(대표자)
-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(종업원 포함)

○ 행정처분 대상자(3시간) :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 사업자

3) 교육비용: 피교육자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가 납부

4) 위탁기간: 3년(예정: 2021. 3. 23. ~ 2024. 3. 22.)

○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

5) 선정방법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

6) 소요예산: 없음

※ 피교육생 1인당 자비 30,000원 부담

7) 그간 추진현황

○ 2020. 12.: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 수립

8) 향후계획

○ 2021. 1.

- 군의회 동의(심의·의결)
- 수탁기관 모집 공고(공개모집)
-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

○ 2021. 2.

- 위탁지정신청서 접수: 수탁기관 → 군수
- 수탁기관 선정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

○ 2021. 3.

- 위·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

3. 관계법령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, 제50조
-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 제25조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, 제6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[전문위원 신순화]

-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실시 능력이 있는 법인·단체 등에게 교육을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,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,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,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, 자치사무인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아울러,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.
- 따라서 효율적인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